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7가단8052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박동인

원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김영식

변론 종결 2019. 3. 8.

판결 선고 2019. 3.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2.

13.부터 2017. 10. 20.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12. 13. 주식회사 F 및 G 주식회사와 광주시 H 소재 I물류센터 J동 1층(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15.부터 2016. 1. 14.까지, 보증금 142,955,000원, 임대료 월28,591,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 피고 회사와 참가인의 편의점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2011. 2. 16.부터 2016. 2. 15.까지 이 사건물류센터에 위탁받은 물품을 관리 및 보관하여 참가인의 가맹점에 배송하기로 하고 참가인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영업보증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서 제16조(계약의 이행)]

3. 참가인은 참가인의 물류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해 피고 회

사에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영업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다.

4. 위 영업보증금 3억 원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 혹은 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시 즉시 참가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5. 피고 회사는 지급된 3억 원의 영업보증금에 대한 반환지급보증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참가인에 제출한다.

[별첨 4) 보증금 약정서]

제2조(보증금 선지급)

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에 있어 5년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영업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 기준에 적합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하여 참가인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반환)

피고 회사는 본 계약기간의 종결, 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탁운영계약이 중도 해지시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 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2011. 2. 16.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1. 2. 16.부터 2012. 2. 15.까지, 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1. 3. 31.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6. 경 원고와 주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으로 하고, 보증내용을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로 하며, 피보험자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15. 2. 16.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5. 11. 1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위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2016. 2. 15.까지 영업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16. 3. 10. 및 같은 해 3. 28. 원고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11.

14. 참가인에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나 제1, 2, 4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보험금 등 합계 305,917,808원[= 보험금3억 원 + 1,479,452원(2016. 11. 15.부터 2016. 12. 14.까지 약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4,438,356원(2016. 12. 15.부터 2017. 2. 12.까지 약정이율인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10. 20.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 주장

피고 회사는 영업보증금 반환채무 보증계약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참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이를 주계약으로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이 당초청구한 보험금 219,802,405원을 초과하여 임의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19,802,405원을 초과하는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물류센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이 사건 물류센터의 운영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과 피고 회사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참가인은 피고 회사에 영업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참가인은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스스로 2015. 11. 11. 피고 회사에 영업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참가인은 영업보증금 반환에 관한 원고의 보증계약 항목이 존재하지 않자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와 참가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형식의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비록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 주계약인 이 사건 위탁계약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로서 영업보증금 상당의 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할의사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참가인에 3억 원을 반환할 의사 없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보증금 3억 원을 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전대차계약서에 전대인으로 날인하여 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자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의사표시의 진의 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법률상 효과로서 영업보증금 상당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선의성을 갖춘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 초과 지급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3. 10. 원고에 보험가입금액 3억 원에서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감액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위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같은 해 3. 28. 다시 원고에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보험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강하영